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6. . . (제 회)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여 공공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74호, 2026. 3. 17. 공포, 2026. 9.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추천(안 제2조)

위원장에게 공무직근로자등을 대표하는 사람과 공무직근로자등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추천하는 사항 규정

나.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안 제3조)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비공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정 방식 규정

다. 안건의 발의 및 상정(안 제4조)

위원회의 회의 안건 발의 및 상정에 대한 절차 규정

라. 실무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등에 대한 절차, 실무위원회
회의 의결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경미
한 사항 규정

마. 공무직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 등(안 제8조, 안 제9조)

공무직발전협의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등에 대한 절차, 발
전협의회의 회의 안건과 실무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하는 사항 규정

바. 분야별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 등(안 제10조, 안 제11조)

분야별협의회의 위원 구성, 분야별협의회의 협의회장의 직무와 회의,
분야별협의회의가 발전협의회에 보고하는 사항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기관) 합의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중(2026. 6. 29. ~ 8. 10.)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추천) ① 법 제4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공무직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노동단체별로 공무직근로자들이 종사하는 부문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나목의 공무직근로자들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
람은 공무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간사위원이 공무직근로자
들이 종사하는 부문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
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
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위

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안건의 발의 및 상정)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안건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의된 안건을 위원장 직권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기획단 단장이 된다.

제6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등)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에 관하여는 법 제7조와 제8조를 준용하고, 실무위원회 회의의 소집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의결)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회부된 안건을 실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결할 수 있다.

1. 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검토를 요청받은 사항

2. 공무직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여 실무위원회에 상정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 발전협의회 및 분야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 구체적인 계획수립 등이 필요한 경우 발전협의회에 해당 사안에 관한 연구·검토 또는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6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무위원회, 발전협의회, 분야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운영세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등에서 의결한 사항에 포함된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거나 의결사항 추진을 위하여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시행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제8조(공무직발전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발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발전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발전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발전협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전협회의 위원 중에서 발전협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공무직발전협회의 회의 등) ① 발전협회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에 관하여는 법 제7조와 제8조를 준용하고, 발전협회 회의의 소집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발전협회의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발전협회”로, “위원”은 “발전협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 발전협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서 연구·검토 또는 대책 마련을 요청한 사항과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협회의에서 보고한 사항을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발전협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전협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분야별협회의의 구성 등) ① 발전협회의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분야별협회를 구성한다.

② 분야별협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전협회의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각 분야별협회의의 업무를 총괄하는 협의회장은 발전협회의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분야별협회의의 회의 등) ① 분야별협회의의 협의회장의 직무와 회의에 관하여는 법 제7조와 제8조를 준용하고, 분야별협회 회의의 소

집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야별협회의의 협의회장”으로, “위원회”는 “분야별협회”로, “위원”은 “분야별협회의의 위원”으로 본다.

② 분야별협회는 회의결과를 발전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연 락 처	(044) 202 - 7665